

NEWSLETTER 1001

May 24, 202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비율 변경 공고 - 검사비용 지급비율 100%로 상향 -

관세청은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비율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 (지급할 금액의 60% → 100%로 상향)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 대상업체
 -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 검사유형
 -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③ 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사업예산

- ('21년) 86.3억원,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2. 문의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1, 2538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III. 시행일

○ '24. 5. 22. 지급 건부터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240522_관세청 공고 제2024-68호_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확대

I Contact



유다예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70-4353-1588
E dyyoo@esein.co.kr



김재우 관세사 / Senior

T 070-4353-1522
E jw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